

#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                  |
|--------|------------------|
| 선<br>람 | 기<br>관<br>의<br>장 |
|        |                  |



제 643호 2019. 8. 16.(금)

## 규 칙

- 남해군 규칙 제1157호 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 1  
 남해군 규칙 제1158호 남해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21

## 고 시

- 남해군 고시 제2019-103호 도로명 주소 고시 ..... 27  
 남해군 고시 제2019-106호 화계지구 신구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변경) 정정고시 ..... 30  
 남해군 고시 제2019-107호 화계지구 마을정비구역의 지정(변경)지형도면 정정고시 ..... 34

## 공 고

- 남해군 공고 제2019-1045호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35  
 남해군 공고 제2019-1049호 정치망 어업면허 처분 및 어업권 소멸 공고 ..... 41  
 남해군 공고 제2019-1057호 공시송달 공고 ..... 42  
 남해군 공고 제2019-1064호 남해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46  
 남해군 공고 제2019-1070호 「2020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 설문조사 공고 ..... 55  
 남해군 공고 제2019-1071호 마을어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 56  
 남해군 공고 제2019-1088호 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57  
 남해군 공고 제2019-1102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62

## 알 림

- 남해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2019-19호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6  
 남해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2019-20호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85

|     |  |  |  |  |  |  |  |  |  |
|-----|--|--|--|--|--|--|--|--|--|
| 회 략 |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5, 행정 3045)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57호

**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을 공포한다.

2019년 8월 16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규칙 제1157호

## 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납세자의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세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0.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남해군의 지방세를 관할하는 군수가 수행한다. 다만,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군수는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제6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조사대상의 선정

제7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군수는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 납세자의 수가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이 세무조사대상자를 식별 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결과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군수가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④ 군수는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1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 1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경우
4. 그 밖에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직접세무조사를 하려면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 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은 달성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를 부분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5항에(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0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최근 5년간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취득가액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3.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인증된 고용우수 중소기업
  4.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 중소기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 제3장 세무조사 실시

제11조(중복조사금지) 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 조사를 해서는 아니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가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 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전부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조사공무원은 미리 정한 세무조사범위, 기간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 제77조제2항의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방법) 군수는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 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접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
2. 서면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3. 부분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일부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제15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조사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제17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세무조사연기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기간) 군수는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은 조사시작일(최종 자료제출일 부터 기산한다) 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제21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군수는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기한 내에 법 제8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22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범칙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발견한 경우
  - 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경우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압수·영치증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압수·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예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4장 조사사무관리

제26조(조사계획수립) ① 군수는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조사준비)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 내용
2. 전산분석 자료
3. 행정기관 자료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의 시작 등)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현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서면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현장의 요지와 설명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29조(조사진행관리) 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30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세무조사 결과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산출근거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 5.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 6.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32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 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군수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1. 세무조사 대상자
- 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 등
- 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업무

③ 군수는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34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군수가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1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조사공무원의 수칙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 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시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6) 조사공무원은 관련법류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착수 전, 조사 진행 중, 조사 종결 후 그 어느 때에도 식·음료 등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 착수 전에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3) 관리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 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소정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조사 처에 도착 즉시 조사 착수 상황, 연락처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지방세 납세자 관리현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나 사적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 제시 받았을 경우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4)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 5)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6)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증빙을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 7)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8)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내용을 관리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받아야 한다.



9)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증빙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복명을 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 전까지 조사적출내용 등 조사 진행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5)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세법 등 개정건의서에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7) 납세자가 권리행사(불복청구, 기타 세법에 의하여 납세자가 갖는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세무조사연기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             |                 |       |                  |  |
|-------------|-----------------|-------|------------------|--|
| 신<br>청<br>인 | 법 인 명           |       | 법인등록번호<br>(생년월일) |  |
|             | 대표자성명           | (남/여) | 전화번호             |  |
|             | 주소·거소<br>또는 영업소 |       |                  |  |

### 신 청 내 용

|        |  |
|--------|--|
| 당초조사기간 |  |
| 연기신청기간 |  |
| 연기신청사유 |  |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      |  |     |
|------|--|-----|
| 구비서류 |  | 수수료 |
|      |  | 없 음 |

[별지 제2호서식]

압 수·영 치 증

|          |         |
|----------|---------|
| 법인명(상 호) |         |
| 소재지(사업장) |         |
| 대표자(성 명) | (남 / 여)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조사기간 동안 당 기관에 압수·영치합니다.

|            |    |  |    |    |    |  |
|------------|----|--|----|----|----|--|
| 압수·영치사유    |    |  |    |    |    |  |
| 압수·영치기간    |    |  |    |    |    |  |
| 압수·영치공무원   | 소속 |  | 직급 |    | 성명 |  |
| 입회인 등      | 소속 |  |    | 성명 |    |  |
| 서명날인 거부 부기 |    |  |    |    |    |  |

년 월 일

남 해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압 수 · 영 치 목 록

| 일련<br>번호 | 물 건 명 | 수 량 | 제 출 자<br>(남 / 여) | 소 유 자<br>(남 / 여) | 비 고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예 치 증

|          |               |
|----------|---------------|
| 소재지(사업장) |               |
| 법인명(상 호) |               |
| 대표자(성 명) | (당 세) (남 / 여)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조사기간 동안 관서에 예치합니다.

년 월 일

|     |     |
|-----|-----|
| 소 속 |     |
| 직 급 |     |
| 성 명 | (인) |

남 해 군 수

[별지 제5호서식]

예 치 목 록

| 일련<br>번호 | 물 건 명 | 수 량 | 제 출 자<br>(남 / 여) | 소 유 자<br>(남 / 여) | 비 고 |
|----------|-------|-----|------------------|------------------|-----|
|          |       |     |                  |                  |     |

남해군 규칙 제1158호

## 남해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2019년 8월 16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규칙 제1158호

## 남해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이용) 승마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발행하는 이용권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남해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승마체험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취자 등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소란 등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승마장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승마장 안전유지를 위하여 입장거절 및 퇴장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위탁운영 신청 등) ① 승마장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 선정기준) 조례 제4조에 따라 승마장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마장 운영에 필요한 승마 전문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무처리 실적, 경영실적 등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민의 체력증진 및 말 산업의 발전 등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마필 및 승마장 시설 등에 대하여 군수 명의로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승마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의 승마장 운영·관리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하여 계약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손해배상) ① 수탁자 및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승마장 시설 등이 멸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및 이용자는 시설 내 체험 및 행사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승마장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 승마장 위탁 운영 신청서

|              |    |      |     |  |                  |  |
|--------------|----|------|-----|--|------------------|--|
| 법인(단체명)      |    | (  ) |     |  |                  |  |
| 소재지          |    |      |     |  |                  |  |
| 신청자<br>(대표자) | 성명 |      | 남/여 |  | 생년월일<br>(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                  |  |
| 기타사항         |    |      |     |  |                  |  |

『남해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마장 위탁 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남해군수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 1통  | 수수료 없음 |
|      |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        |
|      | 3. 승마장 위탁운영계획서 1부              |        |
|      |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        |

[별지 제2호 서식]

### 승마장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

|                |     |       |     |     |                     |     |     |
|----------------|-----|-------|-----|-----|---------------------|-----|-----|
| 법 인( 단체명 )     |     | ( 공 ) |     |     |                     |     |     |
| 소 재 지          |     |       |     |     |                     |     |     |
| 신 청 자<br>(대표자) | 성 명 |       | 남/여 |     | 생 년 월 일<br>(법인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     |
| 기 간            | 당초  |       | 부 터 | 까 지 | 연 장                 | 부 터 | 까 지 |
| 사 유            |     |       |     |     |                     |     |     |
| 기 타 사 항        |     |       |     |     |                     |     |     |

『남해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마장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 남해군수 귀하

|                  |                              |                       |
|------------------|------------------------------|-----------------------|
| 첨<br>부<br>서<br>류 | 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1통 | 수<br>수<br>료<br>없<br>음 |
|                  |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인감증명서1통 |                       |
|                  | 3. 승마장 위탁운영계획서 1부            |                       |
|                  |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9-10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974-41 외 26건

|             |           |           |           |      |
|-------------|-----------|-----------|-----------|------|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
| ( 별 도 열 람 ) |           |           |           |      |
| 종전주소        | 변경전 도로명주소 | 변경후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변경일 | 변경사유 |
| ( 별 도 열 람 ) |           |           |           |      |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폐지일 |           | 폐지사유      |      |
| ( 별 도 열 람 ) |           |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2~347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8. 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부여

| 연번 | 종전 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
| 1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장리 400-1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974-41    | 20090427 |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
| 2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죽전리 471-2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833-25     | 20090427 |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
| 3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1288-2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 394       | 20090427 |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
| 4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상리 1591-2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803-52    | 20090427 |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
| 5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상리 1138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462       | 20090427 |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
| 6  | 경상남도 남해군 장신면 동대리 115-4     | 경상남도 남해군 장신면 동부대로 2553-9    | 20090702 | 남해군의 동부대로   |
| 7  | 경상남도 남해군 장신면 동대리 217-1     | 경상남도 남해군 장신면 동부대로 2528-9    | 20090702 | 남해군의 동부대로   |
| 8  | 경상남도 남해군 장신면 당항리 326       | 경상남도 남해군 장신면 동부대로 2807      | 20090702 | 남해군의 동부대로   |
| 9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비란리 902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고설로 182-53     | 20090427 | 고현면(옛날에 현)이 있던 고을과 설천면을 잇는 도로임을 반영  |
| 10 |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봉화리 2432      |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금암로 309        | 20090427 | 내산은 고속도로 건설 등 나라발전에 앞장선 최지환 선생이 출생한 곳으로 그의 호를 따 금암로라 함                                |
| 11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임포리 491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무지개로 320-32     | 20090427 | 무지개 모양의 고개인 무지개골이 위치한 길임을 반영  |
| 12 |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74        |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40         | 20090427 | 미조리(미아산 아래에 있는 마을) 해안가를 연결한 도로임   |
| 13 | 경상남도 남해군 장신면 당항리 산126-8    | 경상남도 남해군 장신면 용도로 12         | 20090427 | 행정구역명을 이용, 섬의 모양이 밤같이 생긴 데에서 유래   |
| 14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임현리 99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초양로 129-37     | 20090427 | 초곡(초원의 골짜기)과 초양(초원의 양지쪽)을 잇는 도로임을 반영  |
| 17 | 경상남도 남해군 장신면 동대리 496-6     | 경상남도 남해군 장신면 한재로 16         | 20090427 | 산두곡이라는 고개의 동쪽인 동한재(동대)와 서쪽인 서한재(서대)를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
| 18 | 경상남도 남해군 장신면 진동리 신205-3    | 경상남도 남해군 장신면 흥신로 1452-6     | 20090427 | 고려 흥신왕때 개칭한 장신의 옛 지명에서 유래   |
| 19 | 경상남도 남해군 장신면 진동리 1058-4    | 경상남도 남해군 장신면 흥신로 1228       | 20090427 | 고려 흥신왕때 개칭한 장신의 옛 지명에서 유래   |
| 20 | 경상남도 남해군 장신면 진동리 1058-7    | 경상남도 남해군 장신면 흥신로 1230       | 20090427 | 고려 흥신왕때 개칭한 장신의 옛 지명에서 유래   |
| 21 | 경상남도 남해군 장신면 서대리 1065-4    | 경상남도 남해군 장신면 서부로 728        | 20090427 | 장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
| 22 |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2016      |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노도길 29         | 20090427 | 노도는 양아리에 있는 유인도로서 옛날에 이 곳에서 배의 노를 많이 생산했다 하여 생긴 이름임. '산자삼'이라고도 하며 서포 김만중의 유배지로 유명한 곳임 |
| 23 |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물길리 777       |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동부대로942번길 8-20 | 20090427 |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24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143-3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364번길 40    | 20090427 | 설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6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25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호리 502, 502-1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스포츠로542번길 35-19 | 20091023 | 스포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연번 | 종전 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부여사유 |
|----|----------------------------|----------------------------|----------|
| 1  |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동부대로942번길 5-1 |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동부대로942번길 5-1 | 도로명주소 부여 |
| 2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물길로364번길 30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물길로364번길 30   | 도로명주소 부여 |

남해군고시 제2019-106호

## 화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변경) 정정고시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398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화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의 시행계획이 변경되어 「농어촌정비법」 제6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9. 8. 14.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화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2. 사업의 목적

- 도시·지역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전원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와 수요에 따라, 친환경·저탄소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농촌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 도시민, 지역민 등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 제공으로 농촌지역의 인구 유치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유도

3. 사업비(변경없음)

- 사업비 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 구 분   | 소요예산(기정) | 소요예산(변경후) | 비 고         |
|-------|----------|-----------|-------------|
| 총 계   | 5,383    | 5,383     |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
| 국 비   | 840      | 840       |             |
| 지 방 비 | 4,543    | 4,543     |             |

4. 주요 사업(변경)내용

- 사업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화계리 398번지 일원
- 면 적 : 27,230㎡→28,254㎡(증 1,024㎡)
- 입주계획 가구수 : 주택용지 23가구→26가구, 기타시설용지 3가구
- 변경사유 : 화계지구 마을정비구역 변경에 따른 시행계획 변경
- 사업추진방식 : 공공기관 주도형

5.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공공기관 주도형)

6. 사업시행기간

- 사업기간 : 2016 ~ 2018년 → 2016 ~ 2019년

7.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

- 별첨

8. 관련자료의 열람

-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지역활성과(지역개발팀 ☎055-860-3615)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연번  | 위 치     | 지번  | 지목 | 대장면적<br>(㎡) | 편입면적<br>(㎡) | 소유자 |     | 비고 |
|-----|---------|-----|----|-------------|-------------|-----|-----|----|
|     |         |     |    |             |             | 성 명 | 주 소 |    |
| 합 계 |         |     |    | 총46필지       | 28,254.0    |     |     |    |
| 1   | 이동면 화계리 | 613 | 대  | 592.8       | 592.8       | 남해군 |     |    |
| 2   | 이동면 화계리 | 614 | 대  | 580.7       | 580.7       | 남해군 |     |    |
| 3   | 이동면 화계리 | 615 | 대  | 552.7       | 552.7       | 남해군 |     |    |
| 4   | 이동면 화계리 | 616 | 대  | 544.3       | 544.3       | 남해군 |     |    |
| 5   | 이동면 화계리 | 617 | 대  | 509.5       | 509.5       | 남해군 |     |    |
| 6   | 이동면 화계리 | 618 | 대  | 558.8       | 558.8       | 남해군 |     |    |
| 7   | 이동면 화계리 | 619 | 대  | 499.6       | 499.6       | 남해군 |     |    |
| 8   | 이동면 화계리 | 620 | 대  | 572.5       | 572.5       | 남해군 |     |    |
| 9   | 이동면 화계리 | 621 | 대  | 533         | 533         | 남해군 |     |    |
| 10  | 이동면 화계리 | 622 | 대  | 563.1       | 563.1       | 남해군 |     |    |
| 11  | 이동면 화계리 | 623 | 대  | 564.2       | 564.2       | 남해군 |     |    |
| 12  | 이동면 화계리 | 624 | 대  | 1,172.9     | 1,172.9     | 남해군 |     |    |
| 13  | 이동면 화계리 | 625 | 잡  | 253.9       | 253.9       | 남해군 |     |    |
| 14  | 이동면 화계리 | 626 | 대  | 679         | 679         | 남해군 |     |    |
| 15  | 이동면 화계리 | 627 | 대  | 665         | 665         | 남해군 |     |    |
| 16  | 이동면 화계리 | 628 | 대  | 730.5       | 730.5       | 남해군 |     |    |
| 17  | 이동면 화계리 | 629 | 대  | 732.2       | 732.2       | 남해군 |     |    |
| 18  | 이동면 화계리 | 630 | 대  | 596.7       | 596.7       | 남해군 |     |    |
| 19  | 이동면 화계리 | 631 | 대  | 649.9       | 649.9       | 남해군 |     |    |
| 20  | 이동면 화계리 | 632 | 대  | 760.1       | 760.1       | 남해군 |     |    |
| 21  | 이동면 화계리 | 633 | 대  | 620.2       | 620.2       | 남해군 |     |    |
| 22  | 이동면 화계리 | 634 | 대  | 548         | 548         | 남해군 |     |    |
| 23  | 이동면 화계리 | 635 | 대  | 480.3       | 480.3       | 남해군 |     |    |
| 24  | 이동면 화계리 | 636 | 대  | 561         | 561         | 남해군 |     |    |

| 연번 | 위 치     | 지번    | 지목 | 대장면적<br>(㎡) | 편입면적<br>(㎡) | 소유자         |     | 비고 |
|----|---------|-------|----|-------------|-------------|-------------|-----|----|
|    |         |       |    |             |             | 성 명         | 주 소 |    |
| 25 | 이동면 화계리 | 637   | 대  | 573.4       | 573.4       | 남해군         |     |    |
| 26 | 이동면 화계리 | 638   | 대  | 565.4       | 565.4       | 남해군         |     |    |
| 27 | 이동면 화계리 | 639   | 대  | 550.2       | 550.2       | 남해군         |     |    |
| 28 | 이동면 화계리 | 640   | 대  | 611.7       | 611.7       | 남해군         |     |    |
| 29 | 이동면 화계리 | 641   | 대  | 612.3       | 612.3       | 남해군         |     |    |
| 30 | 이동면 화계리 | 642   | 대  | 532.2       | 532.2       | 남해군         |     |    |
| 31 | 이동면 화계리 | 643   | 대  | 512.3       | 512.3       | 남해군         |     |    |
| 32 | 이동면 화계리 | 644   | 대  | 564.5       | 564.5       | 남해군         |     |    |
| 33 | 이동면 화계리 | 645   | 도  | 651.6       | 651.6       | 남해군         |     |    |
| 34 | 이동면 화계리 | 646   | 도  | 1494.5      | 1494.5      | 남해군         |     |    |
| 35 | 이동면 화계리 | 647   | 도  | 982.8       | 982.8       | 남해군         |     |    |
| 36 | 이동면 화계리 | 648   | 도  | 1024.7      | 1024.7      | 남해군         |     |    |
| 37 | 이동면 화계리 | 649   | 도  | 237.2       | 237.2       | 남해군         |     |    |
| 38 | 이동면 화계리 | 650   | 도  | 69.3        | 69.3        | 남해군         |     |    |
| 39 | 이동면 화계리 | 651   | 공  | 896.6       | 896.6       | 남해군         |     |    |
| 40 | 이동면 화계리 | 652   | 공  | 1670        | 1670        | 남해군         |     |    |
| 41 | 이동면 화계리 | 653   | 공  | 369.4       | 369.4       | 남해군         |     |    |
| 42 | 이동면 화계리 | 654   | 공  | 1289.5      | 1289.5      | 남해군         |     |    |
| 43 | 이동면 화계리 | 655   | 공  | 25.5        | 25.5        | 남해군         |     |    |
| 44 | 이동면 화계리 | 612-2 | 도  | 252         | 252         | 국토교통부       |     |    |
| 45 | 이동면 화계리 | 418-1 | 구  | 166         | 166         | 농림축산<br>식품부 |     |    |
| 46 | 이동면 화계리 | 411-1 | 도  | 82          | 82          | 농림축산<br>식품부 |     |    |

※ 확정측량예정 지역임

남해군 고시 제2019-107호

### 화계지구 마을정비구역의 지정(변경) 지형도면 정정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19-267호(2019.7.25.)로 지정 고시된 남해군 「화계지구 신규 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마을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하여 「농어촌 정비법」 제 10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관리 계획결정(변경)사항에 대해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동 사항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 08. 14.

남 해 군 수

- 1. 구 역 명 : 화계지구 마을정비구역
- 2. 위 치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398번지 일원
- 3. 최초지정일자 : 2016년 12월 1일
- 4. 면 적 : 27,230㎡ → 28,254㎡ (증 1,024㎡)
- 5. 지형도면 열람 방법
  - 지형도면은 남해군청 및 토지이용규제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지역활성화로 문의(☎055-860-361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9-1045호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남 해 군 수

1. 제정이유

- 남해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적용범위 (안 제3조)
- 나. 후생복지도의 운영 원칙 (안 제4조)
- 다.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안 제6조)
- 라.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지원 및 지원절차 (안 제7조 ~ 제8조)

3.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668-801,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복지국 행정과
- 연락처 : 전화 055-860-3122, 팩스 860-3737, e-mail : jipsin7@korea.kr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복지국 행정과 후생팀(860-31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남해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 복지 향상과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한 후생복지사업 시행 및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남해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및 읍·면 행정 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남해군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및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남해군의회 의원, 군에 소속된 청원경찰, 공무원 직근로자, 공중보건 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등에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직위해제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
3.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4. 남해군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남해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상조회 운영
3.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자의 국내 연수 지원
4.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품 지급
5.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품 지급
6.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배낭연수
7. 직장 동호회 지원
8. 직장 화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단합대회 및 노사화합 연찬회 지원
9.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10.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비, 단체보험 지원 및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11. 장애인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12.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공무원에 한한다.

1. 근로지원인 배정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직무수행 및 이동의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절차 등)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공무원은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 공무원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후생복지체도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그 기능은 남해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 1.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 2. 제7조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기관 선정방법과 기준, 위탁협약에 포함할 사항,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등에 대하여는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맞춤형복지제도, 후생복지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남해군 공고 제2019 - 1049 호

**정치망 어업면허 처분 및 어업권 소멸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정치망 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일

**남 해 군 수**

○ 정치망 어업면허 처분사항

| 면허번호          | 어업의종류<br>(어업방법) | 채포물     | 어장<br>위치 | 면허<br>면적<br>(m <sup>2</sup> ) | 면허기간                              | 어업권자                     |                       | 비고      |
|---------------|-----------------|---------|----------|-------------------------------|-----------------------------------|--------------------------|-----------------------|---------|
|               |                 |         |          |                               |                                   | 주 소                      | 성 명                   |         |
| 남해정치<br>제134호 | 정치망어업<br>(정치망)  | 멸치<br>등 | 상주<br>두모 | 50,000                        | 2019.08.06<br>2029.08.05<br>(10년) | 남해군 남해읍<br>화전로38번길<br>25 | 김춘태<br>외1명<br>(두모어촌계) | 재개<br>발 |

○ 정치망 어업권 소멸사항

| 면허번호         | 어업의종류<br>(어업방법) | 채포물     | 어장<br>위치 | 면허<br>면적<br>(m <sup>2</sup> ) | 면허기간                              | 어업권자                     |                       | 비고      |
|--------------|-----------------|---------|----------|-------------------------------|-----------------------------------|--------------------------|-----------------------|---------|
|              |                 |         |          |                               |                                   | 주 소                      | 성 명                   |         |
| 남해정치<br>제54호 | 정치망어업<br>(정치망)  | 멸치<br>등 | 상주<br>두모 | 50,000                        | 2009.08.06<br>2019.08.05<br>(10년) | 남해군 남해읍<br>화전로38번길<br>25 | 김춘태<br>외1명<br>(두모어촌계) | 재개<br>발 |

※ '19/20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남해군 공고 제 2019 - 1057호

## 공시송달 공고

『아산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통지하고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사망 등으로 협의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8. 5.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위치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비고 |
|------------------------------|---------------------------|----------------|-------------------------------|----|
| 아산5지구 급경사지<br>붕괴위험지역<br>정비공사 | 남해읍 아산리<br>산144-4번지<br>일원 | 사면정비<br>L=262m | 2019. 1. 1.~<br>2021. 12. 31. |    |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명칭 : 남해군수

나)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3.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 개별통지문 발송 및 열람장소에 비치

가) 토 지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산144-4번지 외 17필지 14,665 /m<sup>2</sup>

나) 지장물건 :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 토지 등 세부내역은 붙임 조서 참조,

남해군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 고시공고)에서도 확인 가능함

4.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19. 8. 5. ~ 2019. 8. 19. (14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다) 이의신청 : 남해군 안전총괄과 방재복구팀 보상담당으로 서면제출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2019년 9월~(추후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 실시 후 통보)

나)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방법으로 전액현금 지급(단, 압류 및 근저당은 토지소유자가 해제 후 계약체결 원칙)

다) 보상금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① 평가기관 :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시 3인)

② 산정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로 입금

보상계획 열람공고⇒감정평가⇒보상금 산정⇒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  
⇒협의(계약체결)⇒보상금 지급⇒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공탁(협의 불성립시)  
⇒이의재결 또는 소송

마)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바)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사)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가) 열람결과 소유권·기타 권리관계 등이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상기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폐문부재, 이사, 수령거부,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다)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방재복구팀(☎055-860-32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편입예정 토지조서 1부.

6. 공시송달 대상자

| 번호 | 토지소재지      | 소유지번  | 지목 | 면적<br>(㎡) | 소유자 현황      |     |     |    | 비고 |
|----|------------|-------|----|-----------|-------------|-----|-----|----|----|
|    |            |       |    |           | 소유자         |     | 관계인 |    |    |
|    |            |       |    |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
| 1  | 남해읍<br>아산리 | 205-2 | 도  | 89.0      | 남해읍 북변리 484 | 감희0 |     |    |    |
| 2  | 남해읍<br>아산리 | 211-2 | 도  | 307.0     | 남해읍 북변동 569 | 김선0 |     |    |    |

남해군 공고 제2019-1064호

**남해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5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남해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안 제4조).

나. 국제화 촉진 및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안 제7조 ~ 제12조).

다. 자매도시 등의 선정·운영(안 제13조 ~ 제19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9년 8월 25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예산담당관

2). 연락처 : 전화 055-860-3035,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기획팀(전화 055-860-30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증진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남해군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남해군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국제도시 간 우호, 협력, 이해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및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고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자매도시”란 외국도시와 행정·사회·경제·문화예술·관광·교육·체육 등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고 자매결연을 한 도시를 말한다.
4. “우호협력도시”란 외국도시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자매결연 전 단계인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세계화 시대를 선도하는 국제도시 지향
2.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 물적, 제도적 토대의 구축
3. 국제 교류 협력을 통한 역사·문화·관광 진흥
4.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5.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국제적 역량 증진

제4조(적용범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 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각 분야에 군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국제화 촉진 및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제6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이하 “자매도시 등”이라 한다)와의 교류 전략
3. 민간차원의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4.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5.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군수는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제·문화·예술·관광·체육·복지·교육·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
2. 민간단체 및 군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 지원
3. 청소년 국제화 인재육성을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
4. 자매도시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5.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민간 지원)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남해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군이 관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경제인 또는 경제 단체와 추진하는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민간 위탁) 군수는 제9조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국제 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재난·재해 구호 지원) 군수는 자매도시 등이 지진·태풍·해일·폭우 등 재난·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구호인력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국제화 인재 육성) 군수는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화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해야 한다.

제12조(포상 등) 군수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내·외국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3장 자매도시 등의 선정·운영

제13조(협정 체결 등)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매도시 등과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도시 등은 재정여건 및 국제교류협력 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제14조(자매도시 등의 선정) 군수는 외국도시로부터 자매도시 등 협정체결 제의를 받거나 제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및 적정성 등

제15조(사전교류) 군수는 자매도시 등과 협정 체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각 분야별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류협력의 여건과 환경을 사전에 조성하여야 한다.

제16조(군의회 의결) 군수는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7조(협정체결의 효력) 자매도시 등과의 협정체결의 효력은 양 도시의 공동 관심 사항, 교류계획 등 합의된 문서에 양 도시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발생된다.

제18조(교류촉진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자매도시 등과의 협정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 결연 관계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하여 관리하고 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해야 한다.

제19조(협정의 파기) 군수는 협정체결 후 양 도시 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체결된 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자매결연도시와의 협정을 취소할 경우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4장 명예국제협력관 위촉·운영

제20조(위촉)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매결연도시, 우호교류도시 및 그 밖에 외국 도시에 거주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남해군 명예국제협력관(이하 “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 균형 있는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외국 해당 도시의 한인회 또는 재외동포회의 임원
2. 외국 해당 도시의 유력 인사
3. 군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1조(역할 및 의무) ① 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각 호의 사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국제통상 및 문화·예술·관광·체육교류 등에 관한 사항
3. 군정의 대외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② 협력관은 군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임기 및 해촉) ① 협력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협력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촉 원인이 소멸된 경우

제23조(경비 지원) ① 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출장여비(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2. 통신비(우편요금, 국제전화요금 등)

3. 통역비

4. 그 밖에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 ② 협력관은 제1항에 따라 발생된 경비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출장여비는 사전 지급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경비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협력관의 활동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협력관의 여비 지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나목에 준한다.
- ⑤ 협력관의 여비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외국 도시와의 자매도시 또는 우호협력 도시 관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남해군 명예국제협력관 경비 청구서

□ 활 동 명 :

□ 추 진 기 간 :

(단위 : 원)

| 구 분  | 청구금액 | 세부내역 | 비 고 |
|------|------|------|-----|
| 출장여비 |      |      |     |
| 통신비  |      |      |     |
| 통역비  |      |      |     |
| 기 타  |      |      |     |

※ 비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필히 첨부할 것

「남해군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명예국제협력관 활동 경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인 또는 서명)

첨부 : 활동성과 및 증빙자료 부.

남 해 군 수 귀하



남해군 공고 제2019 - 1070호

## 「2020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 설문조사 공고

2020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실질적인 수혜자인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우리군의 중점투자방향 및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활용코자 「2020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2019년 8월 5일

남 해 군 수

### 1. 참여방법

- 가. 남해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
- 나. 군청,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설문지 작성 제출

### 2. 참여기간 : 2019. 8. 5 ~ 9. 5(32일간)

- \*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니 성실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 남해군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055-860-3061)

남해군 공고 제2019-1071호

### 마을어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어업면허 처분 사항 및 소멸 어업권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06일

### 남 해 군 수

○ 어업면허 처분사항

| 면허번호          | 어업의종류<br>(어업방법) | 포획물          | 어장<br>위치        | 면허<br>면적<br>(㎡) | 면허기간                          | 어업권자       |           | 처분<br>년월일  | 비고  |
|---------------|-----------------|--------------|-----------------|-----------------|-------------------------------|------------|-----------|------------|-----|
|               |                 |              |                 |                 |                               | 주소         | 성명        |            |     |
| 마을어업<br>제300호 | 마을어업            | 정착성<br>수산동식물 | 창선면<br>신흥지<br>선 | 970,000         | 2019.08.06<br>~<br>2028.08.05 | 남해군<br>창선면 | 신흥어촌<br>계 | 2019.08.06 | 재개발 |

○ 소멸 어업권 현황

| 면허번호         | 어업의종류<br>(어업방법) | 포획물          | 어장<br>위치    | 면허 면적<br>(㎡) | 면허기간                          | 어업권자    |       | 비고             |
|--------------|-----------------|--------------|-------------|--------------|-------------------------------|---------|-------|----------------|
|              |                 |              |             |              |                               | 주소      | 성명    |                |
| 마을어업<br>제77호 | 마을어업            | 정착성<br>수산동식물 | 창선면<br>신흥지선 | 893,000      | 2009.08.05<br>~<br>2019.08.06 | 남해군 창선면 | 신흥어촌계 | 면허<br>기간<br>만료 |

남해군 공고 제2019-1088호

## 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개설과 KTX 운행 등으로 인한 사천공항의 이용객 저조로 항공사 경영 애로
- 대한항공의 김포 노선의 감편 계획은 사실상 사천공항의 존폐 여부를 가릴 정도의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으로
- 인근 지역의 공항 존재 여부가 우리 군의 장기적인 관광정책 수립, 인프라 등 수용태세 정비에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우리 군의 교통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천공항 활성화가 동반되어야 하므로 경상남도의 지원정책에 발맞춰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지원대상 등(제1조, 제2조, 제3조)
- 나. 지원내용, 지원신청 방법, 지원금의 교부 등(제4조, 제5조, 제6조)
- 다. 지원금의 정산, 지원금의 반환, 지원사업에 관한 감독 등(제7조, 제8조, 제9조)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19년 8월 30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관광진흥담당관 관광마케팅팀
  - 2) 연락처 : 팩스 055-860-3748, 이메일 cutespoon@korea.kr
- 다. 의견제출 방법 :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관광진흥담당관 관광마케팅팀(전화 055-860-86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공항을 활성화시켜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사업자”란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1. 국내 및 국제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 2. 군수가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내용)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 방법,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 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
-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 수
- 5. 운항 사실 기록부
-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7.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제6조(지원금의 교부) 군수는 항공사업자로부터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재정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한다.

제7조(지원금의 정산)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기간 운항실적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 대상 항공사업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그 밖에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9-1102호

###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 남 해 군 수

1. 개정이유

- 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중복 조항 삭제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성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
- 나.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 및 노사발전협의회 요구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중복 조항 삭제
- 나. 근거 법령의 명칭 변경(안 제12조제2항)
  -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준용
- 다. 육아시간 연장(안 제23조제5항)
  - 5세 이하 자녀에 대해 24개월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시간 1일 최대 2시간
- 라. 장기재직휴가 일수 개정(안 제23조제9항)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 20일(개정)
- 마. 포상휴가 신설(안 제23조제11항)
- 바.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기준 명시(안 제23조제12항)
  - 일(日) 최소 4시간 이상 근무(시간선택제 공무원은 3시간이상)
  -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 사용불가 및 시간외근무 명령 불가



사. 출산 시 배우자의 휴가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함.(별표 3)

3.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 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복지국 행정과 후생팀
- 연락처 : 전화 055-860-3122, 팩스 860-3737, e-mail : jipsin7@korea.kr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복지국 행정과 후생팀(860-312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따라”를 “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그 밖에 주민의 권익보호”를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남해군 공무원증 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2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삿날”을 “기일(忌日)”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8조의”를 “영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매년 두 차례 이상으로 나누어”를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두 차례”를 “2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8조제1항”을 “영 제7조제1항”으로 하며, 제6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뺀다”를 “공제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빼지”를 “공제하지”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빼는”를 “공제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제23조제6항 중 “제18조의 연가일수” 를 “연가일수” 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8조제2항” 을 “영 제7조제2항”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5일” 을 “20일” 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⑫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27조의2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중 출산의 일수란의 “5” 를 “10” 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공제한다.

[별 지]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8조의2 관련)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1일 가산
-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br/>         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br/>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br/>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br/>         다.</p> <p>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p> <p>2. · 3. (생 략)</p> <p>4. 그 밖에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br/>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br/>         는 경우</p>   | <p>제3조의2(비밀엄수) -----<br/>         -----<br/>         -----<br/>         -----<br/>         --.</p> <p>1. ---- 의하여 -----</p> <p>2. · 3. (현행과 같음)</p> <p>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br/>         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br/>         -----</p> |
| <p>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br/>         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br/>         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br/>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br/>         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br/>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br/>         는 전화·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br/>         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br/>         다.</p> <p>③ 출장 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br/>         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br/>         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br/>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결과 보고를 말<br/>         로 할 수 있다.</p> | <p>&lt;삭 제&gt;</p>   |
| <p>제12조(복장 등) ① (생 략)</p> <p>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br/>         여는 「남해군 공무원증 규정」을 준용한<br/>         다.</p>  | <p>제12조(복장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br/>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인사혁신처<br/>         총리령)-----.</p>   |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 재 직 기 간     | 연가일수 |
|-------------|------|
| 3월 이상 6월 미만 | 3일   |
| 6월 이상 1년 미만 | 6일   |
| 1년 이상 2년 미만 | 9일   |
| 2년 이상 3년 미만 | 12일  |
| 3년 이상 4년 미만 | 14일  |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 6년 이상       | 21일  |

<삭 제>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급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휴직기간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제삿날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매년 두 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원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두 차례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생 략)

⑤ 공무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며, 친족의 경조사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  
-----.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  
-- 기일(忌日)-----.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  
-----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  
-----.

③ -----  
----- 2회-----.

④ (현행과 같음)

⑤ ----- 영 제7조제1항-----  
-----  
-----.

⑥ <삭 제>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뺀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 휴직자의 연가일수

{[12월-해당 연도 휴직기간]} / 12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

③ (생략)

④ 제21조 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전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삭제)

<삭제>

<삭제>

③ (현행과 같음)

④ -----  
-----  
-- 공제한다. -----  
----- 공제하지  
-----.

제21조(병가) ① -----

-----  
-----  
-----  
-----  
-----  
----- 공제하는 -----  
-----.

1. (현행과 같음)

2. 감염병-----  
-----  
-----

②·③ (생 략)

제22조(공가)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생 략)

② 임신 중의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 90일의 출산휴가(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를 허가 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경우라도 최장 44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생 략)

⑤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

다.

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⑥ -----  
----- 연가일수  
-----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삭제>

⑨ 장기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안식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단, 장기재직 휴가는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사용은

⑨ -----  
----- 영 제7조제2항-----  
-----

불가하다.

- 1. (생 략)
-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 3. (생 략)
- ⑩ (생 략)

<신 설>

<신 설>

제27조의2(공무원의 범위)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남해군의회 의원
- 2. 군수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한다.

-----.

- 1. (현행과 같음)
- 2. ----- 20일
- 3. (현행과 같음)
- ⑩ (현행과 같음)

⑪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 1.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⑫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 없다.

<삭 제>

<삭 제>

알 림

남해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9 - 19호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7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2. 개정이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정확한 산정·부과 및 세입결손 방지 등 체계적 관리 필요성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 변경과 단위단가 공고시기를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등의 이의신청 결정통지 기간과 소멸시효 규정으로 주민불편 완화 및 부과·징수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 공고시기를 명확히 규정 (안 제15조 및 제17조)

- 세입결손 방지를 위해 매년 연평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총사업비 증가 분을 반영하여 단위단가를 산정할 필요에 따라 매년 공고토록 개정

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 개정(안 제15조)

- 원인자부담금의 정확한 산정 및 관리를 위해 건축물 신·증축 등의 인·허가 시에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에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토록 개정

다.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에 일부 포함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근거 명확화(안 제17조)

라. 하수도 사용료,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대해 이의신청 결정통지기간 명시(안 제22조제3항)

마. 하수도 사용료, 수수료 등의 소멸시효 신설(안 제26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9년 8월 27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상하수도사업소
- 2). 연락처 : 전화 055-860-3333, 팩스 055-860-3751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전화 055-860-33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전 읍·면의 게시판 등에” 를 “일간신문 등에 매년 2월까지” 로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가목 중 “인가·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를 “인허가 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임시사용승인 포함)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오수발생량 1m<sup>3</sup>/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남해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매년 2월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 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단가 산정에 반영되지 못한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은 원인자에게 원인자부담금 부과 외 추가적인 공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제4항 중 “제15조제1항제6호에” 를 “제15조제1항제6호에 의한 시기로 하되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에도 같은 규정을” 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원인자부담금은 자본적 지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별표5의2를 참조하여 사용한다.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소멸시효) 사용료, 수수료, 점용료, 부담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 163조의 규정을 따르며,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의2]

### 원인자부담금 사용기준(제17조의2)

1. 관로

| 원인자부담금 사용 가능 | 원인자부담금 사용 불가     |
|--------------|------------------|
| 하수관로 정비공사    | 하수도 준설토 처리       |
|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 하수도 준설사업         |
| 오·우수 분리벽 설치  | 하수도 준설물 처리       |
|              | 하수암거 보수(수선)공사    |
|              | 하수관로 고압제트 준설토 운반 |
|              | 하수관로 보수(수선)공사    |

2. 펌프장

| 원인자부담금 사용 가능                | 원인자부담금 사용 불가      |
|-----------------------------|-------------------|
| 펌프장 펌프 제작 구매 설치             | 노후 유입펌프 수선공사      |
| 하수중계펌프장 침사인양기 교체공사          | 우수 조정지펌프 수선공사     |
| 펌프장 조목스크린 제작 구매 설치          | 초기우수처리 펌프 수선      |
| 펌프장 호이스트 교체 공사              | 펌프장 신설수중펌프 수리     |
| 중계펌프장 배기 팬 증설 및 시설물 설치공사    | 펌프장 수중사류펌프 2호기 수리 |
| 중계펌프장 운영 판넬 및 전기실 CCTV 설치공사 | 펌프장 신설수중펌프 회전자수리  |
| 펌프장 ALTS(자동부하 전환 개폐기) 교체공사  | 펌프장 집수정 침사물 준설공사  |
| 펌프장 펌프기동반 노후 전기판넬 교체공사      |                   |
| 중계펌프장 초음파 수위계 교체공사          |                   |

3. 하수처리장

| 원인자부담금 사용 가능                  | 원인자부담금 사용 불가                 |
|-------------------------------|------------------------------|
| 침사지 세목스크린 교체                  | 염색펌프장 펌프2호기 수리 공사            |
| 처리장 기존염색라인 펌프 교체설치            | 유입펌프 및 냉각수펌프 정기수선            |
|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송수관로 가압펌프 설치       | 유입침사지 소모성 부품 구매              |
| 처리장 송풍기 교체설치                  | 침사지 역사이편 권양기 수선              |
| 하수처리장 2단계 송풍기 현장 제어반 구매 설치    | 하수처리장 침사제거펌프 수선공사            |
| 처리장 공장 초침 레이크스크린 및 부대설비 제작 설치 | 하수처리장 침사 인양기 및 세목스크린 수선공사    |
| 하수처리장 소화 농축조 슬러지수집기 교체        | 하수처리장 세목스크린 수선공사             |
| 처리장 슬러지 펌프 교체                 | 처리장 미세목 스크린 부품제작 설치          |
| 하수처리장 방류 펌프 설치공사              | 처리장 초침 슬러지수집기 부품 구매          |
| 하수처리장 탈수동, 소화 농축조 탈취설비 설치공사   | 처리장 초침 및 잉여슬러지 펌프 부품 제작 구매   |
|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UPS) 및 제어설비 교체    | 하수처리장 포기용 송풍기 수선공사           |
| 하수처리장 2단계 5계열 용존산소 계측기 교체     | 하수처리장 송풍기 정기수선               |
| 하수처리장 2계열 생슬러지 유량계 교체         | 하수처리장 염소소독시설 수선공사            |
| 처리장 TMS관제시스템 데이터로거 교체         | 하수처리장 슬러지 계근대 개선 공사          |
| 슬러지 소각1호기 TMS 설비 교체           | 하수처리장 수전실 메인고압 변압기(154kv) 수선 |
| 처리장 낙뢰방지 설비 공사                | 하수처리장 송풍동의 무정전 축전지 구입        |
|                               | 수질계측 기기 소모품 및 수선비            |
|                               | 하수처리장 탈수기동 지붕층 방수도장 공사       |
|                               | 하수처리장 창호 교체 및 도장공사           |
|                               | 하수처리장 건축물 균열 및 누수 보수         |
|                               | 탈수기동 옥상방수면 크랙보수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5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p> <p>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오수발생량 1m<sup>3</sup>/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해군의 공보 또는 전 읍·면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p>5. (생략)</p> <p>6.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p> <p>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u>인가·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u></p> <p>나. (생략)</p> <p>② (생략)</p> | <p>제15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p> <p>① -----<br/>-----<br/>-----.</p> <p>1. ~ 3. (현행과 같음)</p> <p>4. -----<br/>-----<br/>-----<br/>----- <u>일간신문 등에 매년 2월 까지</u> -----.</p> <p>5. (현행과 같음)</p> <p>6. -----<br/>-----.</p> <p>가. -----<br/>----- <u>인 허가 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 공신청(임시사용승인 포함)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한다.</u></p> <p>나.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 <p>제17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m<sup>3</sup>/일)를 곱하여 산정한다.</p>  | <p>제17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br/>-----<br/>-----<br/>-----.</p>   |

|   |   |
|---|---|
| <p>1. (생 략)</p> <p>2. <u>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u></p> <p>③ (생 략)</p> <p>④ <u>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시기는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다.</u></p> | <p>1. (현행과 같음)</p> <p>2. <u>오수발생량 1m<sup>3</sup>/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남해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매년 2월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단가 산정에 반영되지 못한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은 원인자에게 원인자부담금 부과 외 추가적인 공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제15조제1항제6호에 의한 시기로 하되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에도 같은 규정을 -- ----.</p> |
| <p>&lt;신 설&gt;</p>  | <p>제17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사용) <u>원인자부담금은 자본적 지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별표5의2를 참조하여 사용한다.</u></p>  |
| <p>제22조(이의신청)</p> <p>① · ② (생 략)</p> <p>&lt;신 설&gt;</p>   | <p>제22조(이의신청)</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u></p>   |
| <p>&lt;신 설&gt;</p>  | <p>제26조(소멸시효) <u>사용료, 수수료, 점용료, 부담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의 규정을 따르며,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을 따른다.</u></p>  |

남해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9 - 20호

##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7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조례 개정사항과 부합하지 않는 불필요한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원인자부담금 고지와 징수방법 조항 삭제(제17조)

- 원인자부담금 고지와 징수방법이 개정 조례(조례 제15조제1항제6호) 내용과 부합하지 않아 해당 조항 삭제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9년 8월 27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남해군청 상하수도사업소
- 2). 연락처 : 전화 055-860-3333, 팩스 055-860-3751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전화 055-860-33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규칙 제 호

##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7조(원인자 부담금 고지와 징수방법)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과·징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인자부담금은 공사착공일로부터 10일이내 부과한다.</li> <li>2. 원인자부담금은 부과일로부터 30일이내 납부 하여야 한다.</li> <li>3. 원인자부담금이 1억원이상일 경우 세 차례 분납할 수 있다. 다만, 분납시 납기는 1년으로 하며 공사기간이 1년이하는 준공기한 전까지로 하고 1회는 부과일로부터 30일이내 납부하고 2회 및 3회는 1회 납기 만료일을 기준으로 균등하고 분납하고 공사기간이 1년 초과할 경우에는 1회는 동일하며 2회 및 3회는 1회 납기만료일을 기준으로 5개월마다 부과·징수 고지한다.</li> </ol> <p>②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부담금 분납 비율은 1회 40퍼센트, 2회 30퍼센트, 3회 30퍼센트로 한다.</p> | <p>&lt;삭 제&gt;</p> |